

「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」 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,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. 8. 9.

국토교통부장관

「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」 일부 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건설공사비가 증가하면서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관련 갈등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.

이에, 공사비 증액 및 검증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공사계약과 관련한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

2. 주요내용

가. 입찰참가자를 제한함에 있어 제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없도록 제한 시기를 명확화하고, 법률 개정에도 따라 금품,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 시·도·지사의 입찰제한이 의무화됨에 따라 동 고시 제12조의 임의적 입찰제한 사유에서 금품, 향응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자 함.(안 제12조)

나. 사업시행자의 합동설명회 개최 시기를 입찰마감일 이후로 조기화하여 시공사에게 충분한 홍보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.(안 제34조)

- 다. 계약업무 주체를 사업방식에 맞게 조합등, 사업시행자등으로 구분하여, 조합·신탁 등 사업방식별 특성에 맞게 계약업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.(안 제2조, 제7조, 제14조, 제15조, 제17조, 제26조,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)
- 라. 사업시행자등이 공사계약 체결 전 정비사업지원기구에 계약내용을 검토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계약 내실화 및 공사비 갈등 가능성을 완화하고자 함.(안 제36조제2항)
- 마. 시공자가 사업시행자등에게 공사비의 증액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비 세부 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요청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사비 갈등 가능성을 완화하고자 함.(안 제36조제4항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주택정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의 (정보마당 → 법령정보/입법예고)란을 참고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(☎ 044-201-339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- 가. 성명(법인 혹은 단체명,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 작성
 나. 의견제출 서식(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)

개정(안)	수정(안)	사유

다. 보내실 곳

- 주소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
- 팩스 : 044-201-5532